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3. 2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국토부 항공정책과	담당자	•과장 윤진환, 주무관 송규상 •☎ (044) 201-4204, 4190	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민간항공사에 기상정보 제공 ‘10년간 열세 1,300억’ 보도 관련

-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'04년까지 무료로 제공하다가 '05년 최초 유료화(규제개혁 장관회의)하면서, 추후의 인상율은 기상청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, 국토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'10년과 '14년에 두 차례 사용료 인상은 기상청과 항공사간 사전협의 후 물가상승 범위내에서 인상한 바 있습니다.

구분	'05년 고시 (최초 결정액)	'10.4 고시 (1차 인상)	'14.2 고시 (2차 인상)	3차인상(안)*
국제선 착륙(편당)	4,850원	5,820원(20% 인상, 연 4% 인상)	6,170원(6% 인상, 연 1.5% 인상)	19,500원 (3배인상)
영공통과(편당)	1,650원	1,980원(330원 인상)	2,210원(230원 인상)	7,980원 (3.6배 인상)

※ 기상청은 1차 협의시 착륙시 51,110원(8.3배), 영공통과시 21,630원(9.8배 제시), 2차 협의시 착륙시 46,150원(7.4배), 영공통과시 19,530원(8.8배) 제시

- 국토교통부는 사용료 인상 입장에는 동의하나 원가회수, 이용자 요금전가 등 다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, 기본적으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- 항공기상정보는 국가가 독점 공급하는 항공기 안전에 필수적 공공재이므로 징수권자(기상청)와 납부자(항공사) 상호간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사용료 인상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,
- 국토부는 양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된 인상요율에 대해 선 이견이 없음을 기상청에 전달('18.2.8)한 바 있습니다.

□ 참고로, ICAO(유엔 국제항공기구) 보고서에 따르면 항행서비스료(관제 서비스료, 항행안전시설사용료, 항공기상정보사용료)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세부내역으로 별도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요금수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.

- 미국, 홍콩은 항행서비스료를 부과하지 않으며, 항행서비스료 외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, 호주 등 11개 국입니다.

* 한국(편당) : 항행서비스료(관제서비스료 없이 항행안전시설사용료만 부과) 232천원(편당) / 항공기상정보사용료 6.1천원(착륙), 2.2천원(영공통과)

* 일본(편당) : 항행서비스료 1,152천원(편당) / 별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없음

< 보도내용 (3.2, 한국일보) >

◆ ‘외국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의 형평성문제와 국토부가 기상정보사용료 인상을 꺼린다’

- 우리나라와 달리 전체 항행서비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유럽연합 등 다른 선진국들은 대당 환산한 평균사용료가 미국 5만210원, 프랑스 2만 3,190원, 프랑스 2만 3,199원, 독일 1만5,590원 등으로 추산
- 우리 민간항공사들이 외국에는 훨씬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반대로 외국 항공사 들은 염가에 이용하고 있음.
- 국토부가 항공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료 인상을 꺼려 매년 2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혈세를 메우고 있는 상황임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송규상 주무관(☎ 044-201-419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